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0. 13 선고 2020가단12852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7,843,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2. 19.부터 2020. 3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1. 선고 2009가단483067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행순